

[일련번호 : 1]

## 경기도체육회 기관경고

[제 목] 경기도양궁협회 운영 부실

[소속기관] 경기도양궁협회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양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양궁종목을 소관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경기도를 대표하며 「경기도양궁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4조의 각 사업과 활동을 통해 「규약」 제2조의 목적 달성을 꾀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6조(조직) 및 제33조(회원 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회원종목 단체로서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6조<sup>1)</sup>에 따라 본회에 대한 권리를 이행함과 동시에, 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회는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금을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무국, 이사회 및 총회, 각종 위원회, 시군종목단체 등의 운영과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련 법률,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협회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2016. 11월 협회 규약을 제정한 후 약 8년이 경과한 2024년 현재까지 각종 개정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개정 전

1)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6조(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도 종목단체는 본회 정관 제7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규정내용을 적용중에 있어 협회 「규약」 제정 및 개정을 위해 준용해야 하는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과 상당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규약」에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스포츠 공정위원회 등 각종위원회 구성과 관련 규정 제정이 전무한 실정으로 사업운영간 각종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한시적인 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협회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판단된다.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금번 정기종합감사 자료 요구에도 제출되지 않거나 부실한 면을 보이거나, 보조사업 운영함에 있어 원인과 결과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물을 관리하고 예산이나 자체비 등 금전적인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기준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보조사업 자로써 사업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와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집행·관리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지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협회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확인되었다.

### [조치사항] 경기도양궁협회 회장은

금번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각 부분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을 통해 적정한 협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무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속기관] 경기도양궁협회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양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은 국도비를 비롯한 모든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원인행위를 결정하고, 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근거로 회계를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4조(일반 원칙), 제42조(지출원인 행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sup>2)</sup>, 제32조(세금계산서 등)<sup>3)</sup>,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sup>4)</sup> 등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⑧ “생략”

4) 「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물품·용역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행위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규정, 지침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회계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 문제가 확인 되었다.

#### 가. 분할계약 및 계약처리 부적정

협회는 보조사업 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보조금을 집행 할 경우 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하나 [표1]과 같이 분할계약 및 회계처리에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또한 집행을 할때에는 지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자료가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되기도 하고 추후 증빙자료를 추가하지도 않고 회계처리를 마무리하였다.

**[표1] 분할구매 등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1	제5회 ****	시성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2	2021 ****	훈련장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3	****	용품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4	2022 ****	운영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5	2022 ****	운영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6	2023 ****	표적지 등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계약(7)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7	2023 ****	양궁타켓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계약(6)
8	2023 ****	양궁타겟	* ,***,000	****	분할계약(9)
9	2023 ****	화살 등	* ,***,000	****	분할계약(8)

## 나. 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서 미운영 등 관리 소홀

협회는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실시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나 수감 기간인 `21~`23년도 보조사업에서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하였다.

## 다. 보조금 집행 부적정

협회는 보조사업자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교부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깨끗한 보조금 집행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협회는 20\*\* \*\*\*\* 육성사업을 운영하면서 용품을 구매하고 [표2]와 같이 용품구매에 따른 적립금을 관계자가 적립하였다.

20\*\* \*\*\*\*대회 출전 시 보조금전용카드 제한업종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식비를 지출하였고, 업체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검색 사이트를 통해 해당 업체를 확인한 결과 식비 지출이라고 보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2] 국도비 보조금 적립금 적립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1	2023 ****	의류구입	** ,***	****	마일리지 적립(정**, **점)
2	2023 ****	다과구입	** ,***	****	마일리지 적립(정**, **점)
	2023 ****	식비	** ,***	****	제한업종 사용(업태)

## 라. 집행 증빙서류 부실

협회는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빙을 근거로 지출하여 회계관리를 하여야 하나 [표3]과 같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집행하였거나 추후 증빙서류를 보충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표3] 보조금 증빙서류 부실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1	제5회 ****	시설비	* ,***,000	****	품의서, 타견적서,
		현수막	* ,***,000	****	타견적서, 물품검수사진
2	2021 ****	훈련장비	* ,***,000	****	물품검수사진
3	2021 ****	용품비	* ,***,000	****	비교견적
4	2022 ****	운영비	* ,***,000	****	증빙사진
		운영비	* ,***,000	****	증빙사진
5	2022 ****	운영비	* ,***,000	****	비교견적, 증빙사진
6	2023 ****	표적지 등	* ,***,000	****	물품검수조서
		양궁타켓	* ,***,000	****	물품검수조서
		인건비	* ,***,000	****	통장사본
7	2023 ****	숙식비	***,000	****	사용용도 확인불가
8	2023 ****	숙박비	* ,***,000	****	숙박내역, 숙박명단, 결제시기
		숙박비	* ,***,000	****	숙박내역, 숙박명단, 결제시기
9	2023 ****	양궁타켓	* ,***,000	****	물품검수조서
		화살 등	* ,***,000	****	물품검수조서
10	2023 ****	의류구입	** ,***	****	인수증, 증빙사진
		의류구입	* ,***,000	****	비소모품구입, 인수증, 증빙사진
		다과구입	** ,***	****	증빙사진

## [조치사항] 경기도양궁협회 회장은

향후 회계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보조금 집행 등 회계처리시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번 감사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증빙자료 등을 보완하여 조치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경기도체육회 주 의 조 치

[제 목] 대의원의 임원(감사) 선임 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양궁협회

[내 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양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양궁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20\*\*.\*.\*월 ‘이\*\*’(現 \*\*고등학교 감독)을 행정감사로 최초 선임하였고, 20\*\*.\*.\*.\* 개최한 ‘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시 동일인에 대한 행정감사의 연임을 의결한 바 있으며, 20\*\*년 현재까지 협회 행정감사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연맹의 ‘감사’(행정·회계)의 경우 「규약」 제22조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행정감사’의 경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 종목단체 규정」 제22조제6항<sup>5)</sup>에 따라 연맹 대의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제7조제6항<sup>6)</sup>에서는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행정감사)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연맹의 대의원이 된다고 규정하여 임원과 대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7조제8항<sup>7)</sup>에서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

5)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2조(임원의 선임)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제1항의 대의원중에서 행정 감사 1명을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6)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도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7)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⑧ 도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규약」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 「규약」 제25조제2항에 의거,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심의를 통해 연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단, 회계감사는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5조제1항에 의거,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협회의 대의원을 임원(행정감사)로 선임하면서 관련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가. 대의원의 임원(행정감사) 선임 운영 부적정

협회는 20\*\*.\*\*월 ‘이\*\*’(現 \*\*고등학교 감독)을 행정감사로 최초 선임한 후 20\*\*년 현재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번 정기종합감사에 협회에서 제출한 수감자료에 따르면 ‘이\*\*’은 경기도양궁협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임원이 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의 경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은 상실되어야 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중 1인(규정내 ‘부회장중 1인’)이 협회 대의원으로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행정감사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성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년도 대의원총회 참석서명부(행정감사)

구분	개최일	행정감사 참석현황							비고
		성명							
20**	‘**.**.**. (비대면 회의)	이**	9	X	0		010- 	고	참석
20**	‘**.**.**.	이**	9	X	X		010- 	고	미참
20**	‘**.**.**.	이**	9	대의원					대리 참석

\* 20\*\*~20\*\* 대의원총회 참석서명부 부분 발췌

## 나. 감사의 연임 부적정

협회 행정감사인 ‘이\*\*’은 20\*\*.\*\*월 최초로 선임되었으며, 4년 후인 20\*\*.\*\*.\*\*. 개최된 ‘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시 연임을 의결하였다.

협회 「규약」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 같은조 제2항에 따라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심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경우 20\*\*.\*\*월 최초로 선임된 후 감사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인 2년 후, 즉 20\*\*년 정기총회시 재임여부(1회 연임)를 의결하였어야 하며, 20\*\*년 정기총회시에는 1회 연임기간 까지 만료되었으므로 협회 「규약」 제25조제2항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5조의2 제4항<sup>8)</sup>에 따라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았어야 함이 타당하다.

8)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5조의 2(연임 횟수의 산정) ④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종목단체의 임원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양궁협회 회장은

가. 「규약」에서 정한 대의원의 임원 선임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의 총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해당 대상에 대하여는 필히 본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임원심의를 거쳐 연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준수를 당부드리며, 現 행정감사에 대한 본회 임원심의 절차 이행 등 조치하신 후 그 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경기도체육회 주 의 조 치

[제 목] 임원의 선임 절차 부적정

[소속기관] 경기도양궁협회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양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20\*\*.\*\*.\*. ‘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현 회장(이\*\*)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권한(부의안건명 : 임원개정)을 위임하였다. 이후 선임권한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 회장을 포함한 \*\*명(\*\*.\*\*.\*자 경기도양궁협회 임원명단 기준)의 임원이 구성되었으며, 20\*\*년 현재 협회는 총 \*\*명(회장 및 감사2명 포함)의 임원으로 구성 · 운영중에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양궁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22조에서는 협회 임원에 대한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여 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임원 선임 권한 위임시 동 규약 내용에 따라 차기 총회에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임원의 ‘보선’에 관하여는 같은조 제4항에 따라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장에 임원 선임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결원이 발생하여 이사회에서 보선을 통해 임원을 선임할 경우 차기 총회에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임원을 선임하면서 관련 「규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가. 임원의 선임권한 위임 절차 부적정

20\*\*.\*.\*.\*. 협회는 ‘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일 임기를 시작하는 現 회장(이)\*\* / 임원인준 승인 : “\*\*.\*.\*.\*.”에 임원의 선임권한을 위임하였다. 금번 협회에서 제출한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 중 임원 선임권한 위임에 따라 선임 ·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0\*\*.\*.\*.\*.자 기준 임원 명단을(총 \*\*명 / 부회장 및 이사) 확인하였으나, 차기 총회(20\*\*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보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경우 「규약」 제22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로 그 선임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차기 총회인 20\*\*.\*.\*.\*. 정기대의원총회시 위 \*\*명(부회장 및 이사)에 대한 선임결과 보고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임원 선임절차 이행 부적정

1) 협회는 20\*\*.\*.\*.\*. ‘20\*\*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명의 재적임원중 \*\*명이 참석하였다.(참석서명부 기준 / 부회장\*, 이사\*) 협회에서 제출한 수감자료 중 ‘20\*\* 정기이사회 참석자 명단’을 살펴보면, 당일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명의 부회장 및 이사중 ‘이\*\*’이사의 참석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협회에서 제출한 수감자료(20\*\* 협회 임원명단 및 20\*\*년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자료중 임원명단)에는 해당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감범위내 (\*\*~\*\*) 신규선임 및 보선여부 또한 일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이\*\*’이사의 경우 협회의 적정한 선임(보선 포함)절차 없이 협회 임원으로 활동(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협회에서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거, 20\*\*~20\*\*년간 임원의 변동 추이를 확인하였으며, 그중 ‘김\*\*’ 이사(\*\*\*\*감독)의 경우 20\*\*년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20\*\*년 명단에서 제외된 후 20\*\*년 현재 임원명단에서 재차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협회 임원에서 본인의 사임 등으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20\*\*년 임원으로 재차 선임된 사항은 ‘보선’절차로 선임되었다고 추정되나, 제출된 수감자료 등 절차이행은 일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임원선임 절차가 생략되었다고 판단된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양궁협회 회장은

향후 임원선임시 「규약」에서 정한 선임 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이행되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회장 및 이사의 경우 再 선임과정을 거치는 등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 경기도체육회 주 의 조 치

[제 목] 이사회 및 총회 운영 부적정

[소속기관] 경기도양궁협회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양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금번 정기종합감사 수감범위인 20\*\*년부터 20\*\*년까지 총 \*회(이사회 \*회, 총회 \*회)를 개최하면서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안) 및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등 수개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표2] ‘21~’23년도 이사회 및 총회 개최

#### 현황

순	구 분	개최일	보고 및 심의안건		비고
1	이사회	‘**.**.**	① ③ ④ ⑤ 경		회 비대면
2		‘**.**.**	① ②		※ 회의자료 등 관련 문서 미보존 (협회 구두 확인)
3		‘**.**.**	① ②		
4	총 회	‘**.**.**	① ② ③		비대면
5		‘**.**.**	① ②		
6		‘**.**.**	① ②		

\* 20\*\*~20\*\* 수감자료 및 구두를 동안 개최연황 구성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이사회 및 총회 개최시 「경기도양궁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각 기능에 따라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야 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규약」제10조 및 제16조<sup>9)</sup>에서 정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실 출석수와 출석인원의 찬성수 등을 기산하여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재적대의원중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규약」 제8조제6항에 따라 총회 3일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더불어, 협회는 「규약」 제50조 2호에 따라 협회의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하므로, 이사회 및 총회 개최 관련 사항(회의자료, 참석 서명부, 회의록, 소집에 관한 사항 등)과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 성실히 보존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매년 정기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있고, 절차에 관하여는 협회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가. 총회 대리인 참석 운영 부적정

협회는 수감범위인 20\*\*년부터 20\*\*년까지 총 \*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각 연도별 대의원의 대리인<sup>10)</sup>이 참석한 것이 확인된다.

9) 「경기도양궁협회규약」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0)

대의원의 대리인 참석시 협회는 「규약」 제8조제5항에 의거, (부회장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동조 제6항에 따라 총회 3일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 받아 대리인을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금번 협회에서 제출한 수감자료에 따르면 각 연도별 대리인 참석이 확인되나, 그에 따른 위임장 제출 등 대리인 참석에 대한 통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 ※ 연도별 총회 참석서명부(\*\*~\*\*) 등 관련자료의 미보존으로 확인 불가함

이는 대의원의 대리인 참석 절차에 대한 규정사항의 위배되어 임의적인 대리인 참석일 것이며, 자격 및 의결권행사의 유효 여부 또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 나. 의사 및 의결정족수 미충족

협회는 20\*\*년부터 20\*\*년까지 총 \*회의 (정기)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실제 참석한 임원을 증빙할 수 있는 참석서명부 등의 미보존으로 이사회 개최 및 의결 관련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협회에서 제출한 수감자료에 따르면 ‘20\*\*년 정기이사회’의 경우 참석서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당일 \*\*명의 임원(부회장\*\*, 이사\*\*)<sup>11)</sup>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20\*\*년 당시 재적임원 총 \*\*명(감사 \*명 제외)임을 감안(20\*\*.\*\*월 기준 협회 임원명단)하면 출석율 \*\*%로 해당 이사회는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개회가 불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허나, 이후 별도의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등을 미루어 당일 이사회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채 진행 및 부의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일 의결된 부의안건(자료 미보존으로 인한 세부안건 확인 불가)의 경우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11) [ ]

## 다. 회의자료 등 관련자료 미보존

협회는 「규약」 제5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나, 금번 정기종합감사 수감범위인 20\*\*년부터 20\*\*년까지 총 \*\*회의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자료(개최통보문건, 참석서명부, 회의자료, 회의록 등)에 대한 보존이 미흡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향후 각 회의체별 개최의 적정성, 의결안건에 대한 효력 여부 등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회 운영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상당히 미흡하므로, 조속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사항] 경기도양궁협회 회장은

향후 이사회 및 총회 개최시 협회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위배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사회, 총회 해당 자료를 포함한 협회 운영간 발생 문서 등 보존방안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시어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 경기도체육회 주 의 조 치

[제 목] 규약 및 기타 규정 운영 및 관리 미흡

[소속기관] 경기도양궁협회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양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은 「경기도양궁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52조(규정변경), 제53조(규정제·개정 등), 제54조(규정의 해석)에 따라 협회는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sup>12)</sup> 및 제53조<sup>13)</sup>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본회 각 제규정을 준용하여 「규약」,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개정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회의 종목단체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협회는 해당 절차에 따라 제·개정하여야 한다.

12)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2조(규약변경) ① 도종목단체가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도종목단체의 승인에 앞서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① 도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도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 한다.  
③ 도종목단체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번 정기종합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협회는 본회 ~~종목단체~~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 제·개정하지 않아 최신화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본회의 경기도종목단체 규정과 협회의 규약이 서로 충돌하여 본회가 ~~종목단체~~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크게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규정간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하여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표1] 경기도양궁협회 규약 및 규정 제·개정 현황**

순	구 분	제개정 일자	비고
1	경기도양궁협회 규약	2016.11.08.. 개정 (2016.11.08. 승인)	
2	회장선거관리 규정	2018.05.08. 개정 (2020.12.24. 승인)	[종목지역파트-4014 (2020.12.24.)]

이와 더불어, 협회는 위 2개 규정외 별도의 제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협회 운영에 필요한 인사, 회계, 민원사무처리, 대회운영,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무분별한~~ 협회 운영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조속한 규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양궁협회 회장은**

회계 규정, 민원사무처리 규정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비롯하여 협회에서 추최·주관하는 대회의 운영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제정되어 운영중인 규약 및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본회 공정감사실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전자문서 및 기록물 관리 미흡

[소속기관] 경기도양궁협회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양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은 「경기도양궁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제2호에 따라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 관리를 통해 보존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문서를 PC로 행정, 회계 문서 전부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의 서류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고 기관과 공문서를 주고 받을때는 ‘문서24’<sup>14)</sup>를 활용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능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

감사결과 협회의 문서관리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서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로 보조금 수령 및 집행한 서류자체도 제대로 보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14) 행정·공공기관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간 양방향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행정안전부 제공)

또한 문서 수발신에 대한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문서가 어떤 문서번호로 나갔는지 조차 확인이 어려웠고 외부기관에서 접수된 수신문서도 제대로 확인 할 수 없었다.

문서24의 경우 일정기간 도래시 첨부서류가 자동 소멸되어 기록물 보존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협회 담당자 PC에 보존하고 있으나 가능 고장 등으로 보존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양궁협회 회장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과도한 행정적 소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회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소속기관] 경기도양궁협회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양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양궁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종목운동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체력을 향상케 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규약」 제4조의 각종사업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써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와 그 구성 등에 대하여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규약」 제37조부터 제39조의 조항을 두어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규약」 제37조제6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 기관의 해당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그 기능에 비추어 협회 운영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로 「규약」 제38조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8조,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규약」 제37조부터 제39조의 조항을 두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규약」을 포함한 각종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그 운영 및 위원 구성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가. 각종 위원회 미구성

협회의 경우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약」을 통하여 마련하고 있음에도 2024년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회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한시적인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규약」 제38조를 통해 별도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정한 기능에 비추어 협회 운영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2024년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 나. 각종 위원회 규정의 미제정

「규약」 제37조제6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기관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9조 제3항<sup>15)</sup>에서도 도종목 단체가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위원회 설치시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

15)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도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규약」 제38조 제4항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8조 제4항<sup>16)</sup> 또한 동일내용을 규정하여 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에 의거,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규약」외 별도의 각종 위원회 규정을 제정한 바 없다.

### [조 치 사 항] 경기도양궁협회 회장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 등을 준용하시어 각종 위원회 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협회의 각종 규정 관리 및 징계, 포상 등에 관련된 필수적인 위원회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제정, 위원회 구성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일련번호 : 9]

##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임직원 수당지급

[소속기관] 경기도양궁협회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양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통해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 지침」에 따라 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수당(인건비)를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강사비의 경우 단체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임직원에게 강사비 예산의 50%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표1]과 같이 국도비를 보조받은 대회에서 임직원을 심판, 운영 요원 등으로 배정하고 과업을 맡긴 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 보조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보조금과 관련된 기준이나 지침에는 다소 상이 할 수 있는 지급으로 강사비의 경우 강사비 지급기준을 따라 지급하되 강사비 예산의 5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표1] 경기도양궁협회 임직원 인건비 지급 현황**

순	대회명	금액	내역	대상자
1	2023 ****	* ,***,000	임** 등 17명	
2	2023 ****	* ,***,000	임** 외 18명	
3	2023 ****	* ,***,000	윤** 외 8명	

수당의 성격이 심판의 경우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양궁협회에 심판 요청을 통해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요청을 하지 않고 내부 임직원을 활용하여 운영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양궁협회 회장은**

국도비 보조를 통해 대회 개최 등 사업운영시 보조금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소속기관] 경기도양궁협회

[내용]

### 1. 업무개요

경기도양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은 「경기도양궁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산 및 회계관련 조항을 두어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규약」제40조(재산의 구분), 제41조(재원), 제42조(잉여금의처리), 제43조(재산의 관리),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제45조(회계연도),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47조(회계감사 등) 재산 및 회계조항을 두고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회계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국도비를 비롯하여 년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회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도 제정되어있지 않았고 회계관계 직원에 필요한 재정보증보험 조차 가입되어있지 않았다.

**[조치사항] 경기도양궁협회 회장은**

회계와 관련된 협회 임직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